

치 료 감 호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 10. 2.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및 관련 서식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14. ~ 9. 21.)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검찰청”을 각각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검찰청”을 “공소청(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검찰청”을 “공소청(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각각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22조 중 “검찰청”을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검찰청”을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로 한다.

제29조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검찰청”을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4서식, 별지 제16호의5서식,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송치서류) ①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에 처(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하 “치료감호대상사건”이라 한다)을 <u>검찰청</u> 에 송치할 때에는 의견서에 적용법조와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의견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u>검찰청</u> 에 송치하기 전에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송치서류) ① ----- ----- ----- ----- <u>광</u> <u>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는 지</u> <u>방공소청 지청</u> ----- ----- -----. ----- ----- -- <u>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u> <u>는 지방공소청 지청</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치료감호사건의 보고) ① <u>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u> 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u>검찰청</u> 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치료감호사건의 보고) ① <u>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u> ----- ----- ----- <u>공소청</u> (<u>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말한다</u>)----- -----.
②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u>검찰청</u> 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u>검찰청</u> 의 장에게 그 사	② ----- ----- ----- <u>공소청,</u> <u>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는</u> <u>지방공소청 지청</u> -----

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판 결과의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치료감호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판 결과를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처분결과통보서송부표에 적어서 송치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
① (생략)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형이 병과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가 결정되었으나 남은 형기가 있을 때에는 즉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종료와 남은 형기 등 형의 집행 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의 가종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 외의 자유형 또는 노역장유

----- 공소청(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을 말한다)
-----.

제9조(재판 결과의 통보)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

제11조(치료감호의 집행 지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

③ -----

치(이하 이 조에서 “자유형등”이라 한다)를 먼저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심사·결정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검사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자유형등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⑤ (생략)

제22조(검사의 자료 이송)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경우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자료를 보존 중인 검찰청의 검사는 피보호관찰자의 새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의 촉탁) 검사인 조사공무원은 치료감호사안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하면 지방법원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그 조사

----- 지방법원
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

④ -----
-----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검사의 자료 이송) -----

-----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

-----.

제29조(조사의 촉탁) -----

-----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를 촉탁할 수 있다.

제3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치료감호대상사건 및 치료감호사안의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검찰청에만 갖추어 두되,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신청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2. ~ 6. (생략)

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① 검사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그 소속 지방법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보존하고, 그 외의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보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찰청에 보존 중인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3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

-----.

1. -----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

2. ~ 6. (현행과 같음)

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① -----

----- 지방법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

② ----- 지방법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 지방법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

○ ○ 공 소 청

사건번호 20 형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지방법원장 발 신 ○ ○ ○ 공소청

검 사 ○ ○ ○ (인)

제 목 치료감호청구서

아래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합니다.

피 치 료 감 호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등록기준지	
	주 거	
	직 업	
죄명		
치료감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신병	20 . . . (보호)구속 불구속	
변호인		
붙임	1. 구속영장이나 그 등본 또는 치료감호영장이나 그 등본 1부 2. 변호인 선임서 1부 3. 피의자 수용증명 또는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증명 1부 4. 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또는 보호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1부	

치료감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공 소 청

사건번호 20 형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지방법원장 발 신 ○ ○ ○ 공소청

검 사 ○ ○ ○ (인)

제 목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며, 치료감호를 청구합니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등록기준지	
	주 거	
	직 업	
죄명		
공소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신병	20 . . . (보호)구속 불구속	
변호인		
붙임	1. 구속영장이나 그 등본 또는 치료감호영장이나 그 등본 1부 2. 변호인 선임서 1부 3. 피의자 수용증명 또는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증명 1부 4. 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또는 보호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1부	

공소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경 찰 서

20 보구 제 호

도 양 이

수신 ○○공소청장

발신

경찰서

사법경찰관

(인)

제 목 **치료감호영장신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 아래 사람을 경찰서에 보호구속하고자 하오니 20까지 유효한 치료감호영장의 발부를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보호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1. 신청원인사실 :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공 소 청**

20 보 구 제 호

의
에
의

수신 ○ ○ 지방법원장

제 목 치료감호영장청구

위와 같은 치료감호영장신청에 대해 보호구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공소청

검사

(인)

기각의 취지 및 이유	
-------------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검사	○○검사	○○○	○ ○ 공소청	보존		
					치료감호 청구시효	년 월 일	
					재기	년 월 일	
	치료감호불청구결정서						
	20 년 형 제 호 검사 (인)						
	치료감호대상자			죄명			
	결정		년 월 일				
명령		인		집행		인	
집행	석방지휘				20 . . .		
월 일					20 . . .		
	치료감호사건 요지						
사건	조사결과						
월 일	청구하지 않는 이유						
	압수물건처분					비고	
압수	명령	인	집행	인			
월 일	가환부대로 본환부		20 . . .				
결과통지	제출인환부		20 . . .				
월 일	피해자환부		20 . . .				
			20 . . .				

국립법무병원(국립 ○ ○ 병원)

제 호

년 월 일

수 신 ○○공소청장

발 신 국립법무병원장(국립○○병원장)

직인

제 목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피치료감호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지			
	죄 명			
	치료감호 선고 사건번호			
총 연장 횟수	총 회	집행 받은 치료감호 기간	년 월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이유	필요시 별지 기재			
첨부				

○ ○ 공 소 청

사건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 신 ○ ○ 지방법원장

발 신 ○ ○ ○ 공소청

검 사 ○ ○ ○ (인)

제 목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청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합니다.

피치료감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죄 명	직 업	
	치료감호 선고 사건번호		
총 연장 횟수	○회	집행받은 치료감호 기간	○○년 ○○월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필요시 별지 기재		
참고자료			

○ ○ 공 소 청

○ 집 제 호

년 월 일

수 신 국립법무병원장(국립○○병원장)

발 신 ○ ○ ○ 공소청

검 사 (인)

제 목 치료감호 기간 연장 집행지휘서

아래와 같이 치료감호 기간 연장이 결정되었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 연장 집행을 지휘합니다.

피치료감호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지	
	죄 명	
결 정	법 원 및 결 정 일	○○ 지방법원 . . .
	확 정 일	
	치 료 감 호 기 간	
비 고		
첨 부	결정문 등본 1통	

국립법무병원(국립 ○ ○ 병원)

제 호 년 월 일

수 신 ○○공소청장(○○지청장)

발 신 국립법무병원장(국립○○병원장)

직인

제 목 집행순서변경요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아래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 외의 자유형(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피치료감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집행 중인 치료감호	죄명	
	법원	○○○○법원
	선고일	. . .
	형명 · 형기	
	확정일	. . .
	치료감호 집행개시일	. . .
변경할 자유형 (노역장유치)	죄명	
	법원	○○○○법원
	선고일	. . .
	형명 · 형기	(노역장유치 일)
	확정일	. . .
집행순서변경이 필요한 이유	필요시 별지 기재	
첨부 서류	판결서 등본 1통, 치료감호 집행지휘서 1통	

210mm×297mm[백상지 80g/㎡]

○ ○ **공 소 청**
(전화번호)

집
징

년 월 일

수 신 국립법무병원장(국립○○병원장), ○○교도소장(○○구치소장) 발 신 ○○**공소청**(○○지청)

검 사 ○ ○ ○ (인)

제 목 집행순서변경지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아래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 외의 자유형(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합니다.

피치료감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집행 중인 치료감호	죄명	
	법원	○○○○법원
	선고일	. . .
	형명 · 형기	
	확정일	. . .
	치료감호 집행개시일	. . .
변경할 자유형 (노역장유치)	죄명	
	법원	○○○○법원
	선고일	. . .
	형명 · 형기	(노역장유치 일)
	확정일	. . .
첨부 서류	판결서 등본 1통, 치료감호 집행지휘서 1통, 집행순서변경요청서 1통	

210mm×297mm[백상지 80g/㎡]

○ ○ 공 소 청

치 료 감 호 집 행 장 번 호	치료감호집행장	20 감집 제 호
		20 형 제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세)	
등 록 기 준 지		
주 거		
직 업		
선 고 법 원		
선 고 일	20 . . .	
확 정 일	20 . . .	
죄 명		
그 밖의 참고사항 (피치료감호자의 배회처 등)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한 치료감호집행을 위해 공소청에 구인한다. 이 집행장은 20 . . . 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년 월 일
		공소청
		검사 (인)

○ ○ 보호 관 찰 소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신 ○○공소청장

발신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 목 유치허가 신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사람을 ○○○에 유치하고자 하오니 유치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구 인 일 시	. . . :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1. 준수사항 위반사실: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 ○ 공 소 청

수신 ○○법원장

년 월 일

제 목 유치허가 청구

위와 같은 유치허가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유치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공소청

검 사 (인)

○ ○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신 ○○공소청장

발 신 ○ ○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 목 []가종료의 취소, []치료 위탁 취소 신청의 요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4항 또는 제43조제3항(보호관찰소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가종료의 취소,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을 요청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사건번호					
원판결 내용	판결법원		판결연월일		형명·형기
	죄명				
[]가종료 일자 []치료 위탁 일자					
[]가종료의 취소, []치료 위탁의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기재와 같음				
그 밖에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유치허가 일시	. . . :				
그 밖의 참고사항	별첨 소명자료 참조				

○ ○ 공 소 청

수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년 월 일

제 목 []가종료의 취소,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결과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종료의 취소,
[]치료 위탁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공소청

검 사

(인)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년 월 일

○○ 보호관찰소장
수신 ○○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의 발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직인
장

제목 가종료 취소 또는 치료 위탁 취소 통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가종료 취소 / []치료 위탁 취소된 피보호관찰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피보호관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거지	
결정일자	. . .	
취소 사유		
재범사건처리	공소청(법원)	○○○○ 공소청(○○○○ 법원)
	처분(선고)일	. . .
	죄명	
	처분(선고)내용	
비고		
첨부 서류	결정서 등본	

○○검사	○○검사	○○○

○ ○ 공 소 청

20 치신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발 신 ○ ○ ○ 공소청

참 조 검 사 ○ ○ ○ (인)

제 목 심사·결정 신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심사·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 내용		
피치료감호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세)
	직 업	
	주 거 지	
	등록기준지	
첨부	1.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서 2. 치료감호 판결등본 3.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4.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5. 그 밖의 자료(치료 위탁 신청 시 제출하는 서약서 등)	

국립법무병원
(국립○○병원 · ○○보호관찰소)

수 신 ○○공소청장

년 월 일

발 신 국립법무병원장
 (국립○○병원장 ·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 목 심사·결정 신청에 대한 의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심사·결정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피치료감호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직 업	
	주 거	
	등 록 기 준 지	
의 건		
첨 부		

국립법무병원 (국립○○병원·○○보호관찰소)

20 제 호

년 월 일

수 신 ○○공소청장

발 신 국립법무병원장
(국립○○병원장·○○보호관찰소장)

직인

제 목 심사·결정 신청 요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결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내용				
피치료감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등록기준지			
치료감호처분	판결선고법원		보호관찰 개시일자	년 월 일
	판결내용		보호관찰 개시사유	
	남은 치료감호기간	년 월 일	보호관찰 종료예정일	년 월 일
의 견				
첨 부				

